보성군의회 공고 제2026 - 12호

보성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보성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보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성군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대금 및 자재·물품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지급 여부 확인 및 체불신고·상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관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대상사업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권장(안 제4조 및 제5조)

❍ 근로자 투입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확인(안 제6조)

❍ 임금 등 지급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서 작성(안 제7조 및 제8조)

❍ 임금 및 각종 대금 지급 여부 확인(안 제9조)

❍ 체불신고 창구 운영 및 상담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 기간: 2026. 11. 10. ~ 11. 16.(6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850-5845)

- 규칙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6,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우 59455)

[붙임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보성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보성군의회 공고 제2026-12호)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대금 및 자재·물품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적정한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와 관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 등"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군과 관급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관급공사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대금, 자재·물품대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이란 제5호에 따른 임금 등이 관계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사업감독자"란 관급공사 등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공무 원 또는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등의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및 자재·물품 공급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사업)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사업은 군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체불 발생 이력, 근로자 및 건설기계 투입 규모,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상사업에 대한 체불 방지 조치를 시행할 때 사업의 특성과 체불 위험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역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로자 투입 및 건설기계 등 사용 확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

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 근로자 투입내역
2. 건설기계 사용내역
3. 하수급인 및 자재·물품 공급자 현황
4. 그 밖에 사업 수행 및 체불 방지에 필요한 자료

② 사업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업무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기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료의 확인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권한과 절차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 지급이행서약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체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임금 등 지급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약서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제재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등 지급 확인) ① 군수는 체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대금 및 자재·물품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대금지급확인제도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증제도 등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생략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체불신고 창구 운영) ① 군수는 관급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대금 및 자재·물품대금 등의 체불 예방과 신고 접수를 위하여 체불신고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창구를 기존 계약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체불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로 할 수 있다.

④ 체불신고는 방문,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상담) 군수는 관급공사 등에서 발생한 임금 등의 체불과 관련하여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청)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체불 예방 및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수집·이용 및 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제7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보성군에서 발주한 공사 ·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성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과 물품대금 등을 정당한 근로 · 거래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보성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불(임금, 임대료) 신고서(제10조 관련)

신고자	성 명		연락처	☎ : 휴대폰 :
	주 소			
체불 사업장	업체명			
	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참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관급공사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